

평가지표 9

반부패 시책 사례 공유·확산



시스템 확충-의식강화-적정성 점검

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통한 청렴 HRDK 운영

2024. 6.

HRDK 한국산업인력공단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(사회적 요구)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시행(‘22.5월) 등 공공부문의 이해충돌 방지를 통한 청렴한 기관·사업 운영 관련 사회적 요구 증대
 - 법령 요구사항 및 사회적 기대 수준에 대한 신속·적확한 대응 노력 필요
- (다양한 이해관계) 사업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, 특히 출제·선정 및 각종 심의를 위한 외부 위촉위원 등 활용이 잦음 청렴시민감사관 의견
 - 내부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사업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점검하고 제도 정비를 통한 전방위적 예방 필요

□ 추진전략

- ‘시스템(제도) 확충-의식강화-적정성 점검’ 전략별 세부 실천과제 수립·추진을 통한 다각적 이해충돌 방지 노력 전개로 청렴 HRDK 운영

1. 시스템 확충	• 공고한 HRDK 이해충돌 방지체계 운영	✓ 3개 실천과제
2. 의식 강화	• 내부직원과 관계자의 이해충돌 방지 인식 제고	✓ 3개 실천과제
3. 적정성 점검	• 이해충돌 방지 장치 적정성 점검하여 공정 HRDK 운영	✓ 3개 실천과제

□ 주요 추진내용

1. 시스템 확충	공고한 HRDK 이해충돌 방지체계 마련
실천과제	세부 과제 추진실적
① 이해충돌 방지 전사적 운영체계 수립	· 전사 참여 ‘이해충돌 방지제도 추진체계’ 구축·운영 * 정부경영평가 윤리경영 부문 ‘이해충돌 추진체계 체계적 수립’ 지적사항 해소 - 감사실-윤리경영 담당 부서, 실무부서 간 협력을 통한 전사적 이해충돌 방지체계 확립, 사업별 주요 추진과제 도출·추진·점검 ⇒ 전사적 실시를 통한 구성원 이해·참여도 제고 및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
②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지침 등 제도 확충	·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(‘22.5.18.) 전 내부 운영지침 제정·운영,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 지정·운영하여 제도 시행 기반 완비 내규반영 · 법령의 HRDK 사업별 적용 검토사항 등을 반영한 “알기 쉬운 HRDK 이해충돌 방지 매뉴얼” 자체 제작·배포(‘22.10월) ⇒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기관 내부 기반 강화 및 구성원 이해도 증진
③ 사업의 이해충돌 위험 분야 제도개선	· 능력평가사업 및 국가자격시험 출제 관련 취약분야 제도개선* * ‘21년 ‘이해충돌 위험 자가 진단’ 결과 능력평가, 기술자격출제 사업 순으로 이해충돌 발생 위험 인식도가 높음

실천과제	세부 과제 추진실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설기관 시험장의 청렴서약서 신설, 시험장 소속 직원 실기시험 응시 사전 신고제* 및 위반 시 제재사항, 회피 제도 명시 내규반영 검정관리운영규정 · * 기존 내부직원 실기시험 응시 사전신고제(관련 부서 응시 금지) → 외부위원까지 대상 확대 · 시험출제위원 100% 자동 선정*, 의식강화 교육으로 출제 이해충돌 사전 예방 · * 출제위원 자동선정 비율 '21년 77.7% → '22년 100%(22.3% 확대) · 컨소시엄 심의위원회 위원 회파기피 제도 반영, 기능경기 기술위원 선정 절차 및 위원 책임성 강화 등 외부위원 위촉·활용 관련 제도개선 완료 내규반영 <p>⇒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사업참여 절차 투명성 제고로 이해충돌 요소 사전 차단</p>

2. 의식 강화

내부직원과 관계자의 이해충돌 방지 인식 제고

실천과제	세부 과제 추진실적
④ 임직원 실천서약· 모의신고 훈련으로 내부 인식 수준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고위직 52명 등 총 1,712명 전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 완료('22.6월) · 사적이해관계 모의신고 훈련 실시로 신고제도 이해도 제고(173명) <p>⇒ 전 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인식도·의식 강화 및 기관 차원 의지 표명</p>
⑤ 전 직원 관련 교육 수료를 통한 제도 이해도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실시간 화상교육, 사이버 교육 등 관련 교육 연중 실시 ·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 방지제도 교육 실시 93% 수료 · 고위직 이해충돌 방지제도 대면(실시간화상)교육 100% 수료 <p>⇒ 교육 적극 참여를 통한 제도 이해로 이해충돌 발생 사전 예방 및 의무 숙지</p>
⑥ 관련 콘텐츠 제공을 통한 내·외부 의식 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한국직업방송TV 권익위 '이해충돌 방지법' 공익광고 총 295회 송출 · 시민e이사회를 통해 국민 대상 이해충돌 발생 가능 분야 등 의견수렴하여 '관용차량 사적 사용' 등 개선 검토사항 발굴(관련부서 검토 중) · 권익위 제공 업무편람 전사 공유, 국민 참여 이해충돌방지법 청렴퀴즈 이벤트 등 관련 콘텐츠의 다양한 제공으로 인식도 제고 노력 전개 <p>⇒ 내부직원 뿐 아니라 대국민 제도 인지도 확산 노력으로 청렴 문화 전파</p>

3. 적정성 점검

이해충돌 방지 장치 적정성 점검하여 공정 HRDK 운영

실천과제	세부 과제 추진실적
⑦ 이해충돌 방지 법령 공단 적용사항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사적이해관계자 신고대상'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직무 내용 등 법령의 공단 적용사항을 검토하여 사업 내 제도의 원활한 운영 지원 <p>⇒ 기관 고유사업 특성에 맞게 적용사항을 검토하여 세부 위험요소 파악</p>
⑧ 위원회 이해충돌 특별점검으로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선정·심의 등 위원회 업무의 이해충돌 발생 소지 및 방지제도 적정성 사업별 자체 점검 및 위원회 이해충돌방지 특정감사 실시('22.8월) 청렴시민감사관 제언 · 사전진단서, 사업별 위원회(4개), 기능경기 기술위원 운영 등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개선·강화사항 6건 발굴, 의견통보 완료 <p>⇒ 사업별 외부위원 이해충돌 사전진단서 양식 자체 제작·배포, 사업 주요 위원회, 외부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 제도화 내규반영(위원회 표준 운영규칙 등 4개 개정)</p>
⑨ 고객 접점 서비스 분야 주기적 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관별 청렴채피언을 통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,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등 이해충돌 위험 및 특이사항 발생 여부·위험 점검 · 사업부서, 소속기관별 고객 접점 분야 위험성을 반기별 점검 <p>⇒ 주기적 자체 점검을 통한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및 경각심 제고</p>

□ 추진과정 중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

- (장애요인) 「이해충돌 방지법」 시행에 따라 내규제정 등 제도적 기반은 차질없이 준비가 된 반면,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내부직원의 관심 부족으로 법 이해도 및 인식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음
- (극복방안) 사업별·직급별 특성을 고려,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직원 참여형 이벤트 실시, 홍보활동으로 이해충돌 방지제도 인식 내재화
 - (교육) HRDK매뉴얼 제작을 통한 사업별 적용사항을 반영하고, 고위직 대면교육 및 전직원 화상교육, 이수율 관리 등 체계적 교육으로 이해도 제고
 - (홍보) 전 직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민감도 향상을 위해 매월 퀴즈 이벤트 실시, 카드뉴스 배포, 임직원 청렴서약 실시등 홍보 활동 강화

□ 주요 추진성과

○ 내규·매뉴얼 제·개정을 통한 개선사항 반영하여 튼튼한 이해충돌 방지 기반 마련

- 검정관리운영규정 등 4개 내규 제·개정, 위원회 표준 운영규칙 등 4개 내규 개정 완료

○ 우수한 법령·내규 준수율 및 내부직원 체감도 개선

- 이해충돌 관련 위반 신고 “0”건,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100% 징구
-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‘이해관계자 위험성’ 인식 지속 개선 6.21(‘20)→6.87(‘21)→7.02(‘22)

○ 외부위원 참여 등 사업 과정의 투명성 제고

- 시험장 운영 관련 사설기관 시험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부정 개입 차단
- 이해충돌 요소를 배제한 공정한 기능경기대회 운영을 통해 참가선수와 지도교사 신뢰도* 향상

* 전반적 만족도 89.0%, '21년대비 '22년 공정성 부문 89.3%, 운영개선 부문 87.6% 향상

다각적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통해 “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HRD 파트너” 실현

□ 우수사례 선정 사유

- (대외확산) 쏠 공직자 대상 「이해충돌 방지법」이 시행됨에 따라, 타 기관에서도 쉽게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사례로 판단되어 선정하였음

√ 해당 사례가 '21년도~'23년도 권익위에 제출한 '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'에 해당 여부	예	아니오	
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√ 과제 제출 년도	'21년	'22년	'23년
* ('21년도) 부패방지시책평가 ⑥번 ('22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⑥번 ('23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②번 과제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√ '21~23년도 미평가기관으로 자율과제로 제출 여부	예	아니오	
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